

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제출 안내문(1/2)

당첨자의 경우 정당한 자격이 검증 완료 되어야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, 부적격 및 미계약세대는 관련법령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
아래의 기간 내 자격 검증 서류 미제출 또는 거부시 당첨포기로 간주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

■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

- 제출 대상자 :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전원
- 제출 방법

서류제출기간	2025.08.18.(월) ~ 2025.08.20.(수) 3일간
제출 장소	‘춘천 동문 디 이스트 어반포레’ 견본주택 (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온의동 308-6)

■ 구비서류 (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가능)

- ※ 모든 발급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하여야함.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등상기 모든증명서류는 “주민등록번호” “세대주성명및관계” 및 “주소변동이력” 등 모든 항목이 표기 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※ 아래서류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※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의4에 의거한 청약자는 최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 (보관기간 입주자로 선정된 자 5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6개월 이후 파기)

구분	필수	추가	해당서류	발급기준	유의사항
공동서류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 증명서 추가제출) 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주사실신고증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)/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•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(계약)용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은 불가 ※ 인터넷 발급용 인감증명서 사용불가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(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)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※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(본인) 및 세대원 등 모두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(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) ※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• “생년월일 ~입주자모집공고일”까지 지정하여 발급 ※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※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체 표시,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※ 개명한 경우,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(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
	○		복무확인서	본인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
신혼부부 특별공급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혼인신고일 확인 • 본인 및 배우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“상세”로 발급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	• 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성년인 세대원 전원 제출 (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) -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 포함 ※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과거 3년 이상의 변동사항,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	○		소득증빙 서류	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(단,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·비속의 소득입증서류) ※ Fax 수신 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, 청약접수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※ 신혼부부특별공급 소득 증빙 제출 서류 참고하여 발급
	○		부동산소유현황 (추첨제당첨자)	본인 및 세대원	•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※ 신혼부부특별공급 자산보유 확인제출서류 참고하여 발급
	○		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		•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직계존속	•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 하여 소득산정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)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비속	•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	임신진단서 및 출산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
	○	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 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입양의 경우
전세파해자 제출서류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주택	• 임대차계약서, 낙찰 증명서류(매각허가결정명매, 매각결정통지서공매 등) • 등기사항증명서(임차주택), 임차주택공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가능한 여타의 자료 *(예시) 경매·배당표, 배당요구신청서 등 / 공매·배분계산서 등
부적격 소명자료	○		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해당주택	•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 건물확인서,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• “소형·저가주택등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•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서류

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제출 안내문(2/2)

■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제 당첨자 자산보유 확인 제출 서류

해당자격	자산입증제출서류		발급처
"부동산소유현황"이 있는 경우	필수	① 부동산소유현황 (세대원별 각각 발급) -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※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부동산소유현황 (주민등록번호 공개로 발급) ② 건물(토지)등기사항전부증명서 (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)	①,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(www.iros.go.kr)
	해당자	① 공동(개별)주택가격 확인서 (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)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(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·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인 경우)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(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인 경우) (서울시 외: '위택스' > 지방세정보 > 시가표준액 조회'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) (서울시: 'ETAX이용안내' > 조회/발급 >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'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)	①, ② 주민센터 ③ 위택스(www.wetax.go.kr), 서울시이택스(etax.seoul.go.kr)
"부동산소유현황"이 없는 경우	필수	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	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(www.eum.go.kr)
		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> 등기열람/발급 > 부동산 > "부동산 소유 현황"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(전체 화면 캡처)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(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)	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(www.iros.go.kr) ② 주민센터

■ 소득증빙 제출서류

※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가구당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.
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
해당자격	소득입증제출자료	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-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'으로 발급)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/세무서
	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 날인)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(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)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, ②, ③ 해당직장 ④ 국민연금공단
	전년도 전직자	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※ 근무처별 소득명세서상 "주(현)"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	①, ②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(간접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신규취업자: ①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(근무기간 및 급여액 기재 직인날인 필수) 계속근로자: ②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③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(종합소득세 미신고자는 ④ 거주자의 사업(기타)소득원천징수영수증)	①, ② 해당직장 ③, ④ 세무서
자영업자	일반과세자/간이과세자/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	①, ② 세무서
	법인대표자	①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전년도 재무제표	① 등기소 ②, ③ 세무서
	신규사업자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자	① [국민연금 가입자]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[국민연금 미가입자]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	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
	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③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(직인 날인)	①, ② 해당직장/세무서 ③ 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수급자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	① 주민센터
일용근로소득자	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		①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(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) ② 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		① 견본주택 ② 세무서